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4. 2. 2.

제안자 : 최재옥 의원외

1. 수정이유

- 인사업무에 대한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무과의 소관을 현행대로 하고,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하며,
- 농업기술원 감사관이시험장의 업무는 시험연구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하고,
-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되는 내수면연구소의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총무과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을 삭제하고,
-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의 소관변경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고,
- 농정국 분장사무 중 잠종생산·보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, 감사관이시험장 사무를 현행대로 농업기술원에 존치함.
-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의 통합부분을 삭제하여 현행대로 유지함.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제4호, 제11호를 삭제하고, 제5호 내지 제10호를 제4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0호로 한다.

안 제7조 제1호, 제2호를 삭제하고, 제3호, 제4호를 제1호, 제2호로 하고,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제8호를 제9호로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도·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
4. 행정권한의 재배분 및 위임·위탁
8. 정보통신 및 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

안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3. 종자 생산·보급에 관한사항

안 제23조 “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,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한다”를 “제10호를 삭제하고, 동조 제11조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12호로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24조 “제2항을 삭제하고”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기술원에 잠종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잠사균이시험장을 둔다.

안 제2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특화작목시험장, 잠사균이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.

안 “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(제42조 내지 제45조)를 다음과 같이 한다.”를 삭제한다.

안 “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제52조 내지 제54조) 및 동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(제55조 내지 제57조)를 각각 삭제한다”를 “제4장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(제55조 내지 제57조)를 삭제하고, 동장제7절 충청북도 내수면연구소(제52조 내지 제54조)를 동장제8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(제55조 내지 제57조)로 한다.

안 제46조 제1항중 “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고, 우량 잠종의 생산보급을 위하여”를 “생산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안 제48조 제3항, 제4항을 삭제한다.

안 부칙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제1항, 제2항, 제4항, 제6항을 삭제하고, 제3항중 “제1조, 제2조제4항, 제5조 및 별표 4의 분야별란중 ‘축산위생연구소장’을 각각 ‘축수산연구소장’으로 한다”를 삭제하여 제1항으로 하고, 제5항을 제2항으로, 제7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[별표 1]**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**

명 칭	위 치
옥천포도시험장	옥천군 관내
단양마늘시험장	단양군 관내
음성시설 농업시험장	음성군 관내
잠사군이시험장	청주시 관내